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9. 15 선고 2021가단2208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의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12. 2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21. 3. 16. 접수 제134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50984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16. “피고(C)는 원고에게 31,563,273원과 그중22,800,000원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2009. 7. 13.까지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9. 10. 21. 확정되었다. 2021. 9. 27.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98,272,324원이다.

나. C의 부(父) D는 2020. 12. 28. 사망하였다. D의 상속인은 처인 피고와 아들인 C를 포함한 자식 4인이며, 피고의 상속분은 3/11 지분이고, C의 상속분은 2/11 지분이다.

다.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3. 16. 피고 앞으로 2020. 12. 28.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C에게는 위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 2/11 지분(이 사건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나. 원고에게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가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을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C는 D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여 더 이상 상속분이 없다거나, 위 부동산의 가격이 저렴하여 가액배상으로 산정하면 5,763,636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C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C의 법정상속분이 소멸된다거나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될 수 없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위 부동산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여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

별지

부동산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남구 E F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G

H호

블록조슬래브지붕 2층 국민주택

1층 75.77㎡ 2층 75.7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I

구 조 : 블록조

면 적 : 37.8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남구 E 대 916㎡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770분의 115

위 부동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21. 3. 16. 접수 제 13412호 갑구순위 2 소유권이전등기 중 11분의 2

- 이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소관 -

